

(관인생략)

서울특별시

우(10)-744 서울시 중구태평로1가 31 전화(02)3707-9958 전승3707-9909
우편부서 : 하수국장 중구 태평로1가 31동 3층 1 담장 김현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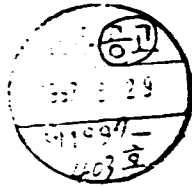
문서번호 차수58460-1172

시행일자 1997. 9. 29

(제1안)

수신 :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 존	김현근
하수국장 전 결	김현근
차수과장	별무담당관 심사필
지하수계장	김현근
기 안 김 현 근	협 조

제목 지하수조례 개정 입법예고

1. 지하수자원의 보전·관리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지하수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2. 지하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별첨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안 : 별첨

나. 예고기간 : '97. 9. 29 ~ 9. 30(20일간)

첨부 : 입법예고 공고(안). 끝.

서울특별시

(하수국장 전결)

수 신 수신처장조

제 목 지하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협의

1. 지하수자원의 보전·관리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지하수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규위반 위험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하여
2. 지하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유관기관 및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지하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협의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97. 9.10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추진할 계획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통보 서식

제 정 (안)	검 토 의 견	내 유
---------	---------	-----

참 부 : 1. 지하수조례개정(안) 1부

2. 지하수조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하수국장 전결)

수신처 서구 1 - 25(하수과장·치수과장), 도시계획과장, 보건위생과장, 민방위과장, 주택개발과장, 폐기물관리과장.

(제 3안)

수신 공보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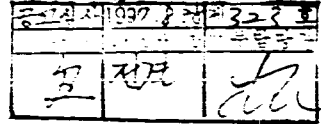
제 목 지하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시보게재 의뢰

우리시 지하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별첨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시보예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부 : 입법예고 공고(안) 2부. 끝.

치 수 과 장

공 고(안)



서울특별시공고 제1997-403호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997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자치법규개정 :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개정안

2. 개정의 주요내용 및 그 취지

가. 지하수조례의 개정 취지에 대하여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지하수법이 전면 개정('97. 1. 13)되고 같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의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심사에 대하여(안 제4조)

양수능력 1일 200톤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심사를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항목·조사방법 등에 대하여(안 제5조)

양수능력 1일 200톤 이하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영향조사와 조영대상 지역을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0.5킬로미터 이내로 할 수 있도록하여 요건을 완화하고, 양수능력 1일 1,000톤을 초과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 평가기준에 의하여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게하여 그 요건을 강화함

라. 지하수 관측정의 설치운영에 대하여(안 제7조)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장기적으로 관측하여 보전·관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및 구청장이 관측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지하수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안 제10조)

지하수법시행령에 지하수관리에 관한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근거조항을 삽입하고 지하수관리자문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대하여(안 제19조)

위반행위의 종류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및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징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7년 9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 치수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전화 : 3707 - 9957~8, 팩스 : 3707 - 99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주소, 정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 및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이하 “환경부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를 이용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양수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 관리자를 말한다
2. “정화장치”라 함은 지하수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기계 또는 전기설비, 계측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3. “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지하수가 지표 또는 지하로부터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에 대비해 설치하는 보호벽, 보호공동, 방호시설과 지하수의 이용량 및 수질측정 등 필요한 유량계, 출수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4.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지하수의 조사] 서울특별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조사범위, 조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

3. 지하수의 수질특성

4. 지하수의 수량특성

5. 기타 지하수의 부존특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①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의를 서울특별시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은 양수능력 200m³ 일 초과대상에 한하며 그 이하의 규모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심의 처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심의절차를 거쳐 통보하며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항목, 조사방법 등] ① 영 제12조제1항 관련 지하수영향조사서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중 양수능력 일 200톤 이하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대상지역을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0.5킬로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양수능력이 1일 1,000m³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 평가기준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변경·해제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영 제20조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관할구청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해제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
2. 지하수개발·이용자의 주요지점에 대하여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지하수 수질의 주요 항목별 수치
3. 지하수개발·이용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변 협조사항

② 시장은 지하수개발·이용자, 기타 이해 관계자가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성실하게 검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수동이 곤란하거나 불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견을 제시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하수관측정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장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자치구청장에게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관측정의 운영관리를 위임할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관측정을 설치 운영하게할 수 있다.

제8조[수질검사기관] 수질검사기관은 검사기록부를 비치하고 수질변동실태를 관측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수질악화시 그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수질검사 수수료 등] 환경부령 제0조 제0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수질검사를 하는데 따르는 검사수수료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를 준용 한다.

제10조[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들을 검토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제107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소속하에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1. 지하수의 조사 및 장기·활용계획
2.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변경·해제 및 주요 행위허가 사항
3. 지하수 개발이용 분정
4. 서울특별시조례 개정안
5. 자치구청장이 요청하는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의
6. 기타 지하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하수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하수국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2. 서울특별시의 2·3급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수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계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 또는 자료나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 【권한의 위임】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의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2. 법 제8조의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3. 법 제9조의 착공신고 등
4. 법 제10조의 허가의 취소 등
5. 법 제11조의 시정명령 등
6. 법 제13조의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7. 법 제14조의 이행보증금의 예치
8. 법 제15조의 원상복구 등
9. 법 제16조제2항의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10. 법 제17조제2항의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11. 법 제20조의 수질검사 등
12. 법 제21조의 출입검사 등
13. 법 제22조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등
14. 법 제27조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지정
15. 법 제31조의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16. 법 제35조의 청문
17. 법 제41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제19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4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또는 자치구의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구분	행위	관련 법 조문	과태료금액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1.	법 제11조제1항의 이행보증금의 납입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제1호	150	200	300
2.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9조제2호	100	200	300
3.	법 제31조제1항의 출입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9조제3호	100	200	300
4.	법 제9조 또는 제13조제2항에 의한 착공 신고 또는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제1호	50	75	100
5.	법 제20조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제2호	50	75	100
6.	법 제20조제3항에 의한 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제3호	25	50	75
7.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40조제4호	50	75	100
8.	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시공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법 제40조제5호	50	75	100
9.	법 제24조제1항 제3항에 의한 시공업의 양도, 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법 제40조제6호	50	75	100
10.	법 제31조제2항 제3항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의 행위를 한 자	법 제40조제7호	15	30	45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제정 1994. 10. 31 조례 제3134호</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 및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이하 "<u>총리령</u>")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를 이용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양수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 관리자를 말한다 2. "양수능력"이라 함은 하나의 이용공에서 최대한으로 양수할 수 있는 동력장치 등의 설비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의 사용량과는 상관없이 펌프시설에 의한 연속 배출량을 말한다 3. "동력장치"라 함은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개정 1997. 조례 제. . . 호</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 및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이하 "<u>환경부령</u>")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를 이용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양수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 관리자를 말한다 <li style="text-align: center;">. 식 재 2. "동력장치"라 함은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 	<p>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이 총리령에서 환경부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정리</p> <p>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양수능력에 관한 내용 명시</p>

현행	개정(안)	사유
<p>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기계 또는 전기설비, 계측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p> <p>4. "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지하수가 지표 또는 지하로부터 오염되거나 오염된 우려에 대비해 설치하는 보호벽, 보호공동, 방호시설과 지하수의 이용량 및 수질측정 등 필요한 유량계, 출수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p> <p>5. "지하수보전구역"이라 함은 지하수의 과도한 사용 및 부적절한 관리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 지반침하, 지하수오염, 대수층 변동 등의 악영향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예상되는 인정한 지역을 말한다</p> <p>6.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p>	<p>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기계 또는 전기설비, 계측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p> <p>3. "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지하수가 지표 또는 지하로부터 오염되거나 오염된 우려에 대비해 설치하는 보호벽, 보호공동, 방호시설과 지하수의 이용량 및 수질측정 등 필요한 유량계, 출수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p> <p>적 계</p> <p>4.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p>	<p>지하수법 제25조의 정의 명시</p>

현행	개정(안)	시유
<p>제3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말한다)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와 관련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범위, 조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부존량 및 개발가능량 2. 지하대수층 조사 3. 수질측정 및 수질분포 4. 지층 및 지질구조 5.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방안 6. 장래 지하수 활용계획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제3조[지하수의 조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조사범위, 조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분포 3. 지하수층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 4. 지하수의 수질특성 5. 지하수의 개발가능량 6. 기타 지하수의 부존특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4조[지하수영양조사서의 심사] (D)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양조사서의 심의를 서울특별시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p>	<p>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 법 6조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권한이므로 삭제하고, 법 제57제2항에 의한 시장의 조사기 규정</p> <p>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에 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지는 다량 개발·이용 경우에는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함</p>

현행	개정(안)	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②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은 양수능력 200m³/일 초과대상에 한하며 그 이하의 규모에 대하여는 구정장이 심의 자리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구정장의 요청에 의거 시장이 심의결과를 기재 통보하며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항목, 조사방법 등] <u>① 영 제12조제1항</u> 관련 지하수영향조사서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중 양수능력의 인 200톤 이하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대상 지역의 개발예정지점중 중심으로부터 반경 0.5킬로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p> <p><u>② 영 제12조 제1항</u> 단서규정에 의거 양수능력의 인 1,000m³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댐건설 관련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p>	<p>도심지역은 환경 및 오염유리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허가대상중 일정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지역 범위를 완화</p> <p>따라서 지하수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 강화</p>

현행	개정(안)	사유
<p>제4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변경·해제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영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공고하고 그 내용을 관할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척 500분의1 내지 1천500분의1 지형도상에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적이 명시된 도면(2개지역 이상일 경우에는 5000분의1 이하의 총괄도면 별도 첨부) 2. 지정·변경·해제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 3. 지하수보전구역내의 주요지점에 대하여 총리령에서 정하는 지하수 수질의 주요 항목별 수치 4. 기타 지하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 협조사항 	<p>제6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변경·해제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영 제20조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관할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시 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변경·해제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 2. 지하수보전구역내의 주요지점에 대하여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지하수 수질의 주요 항목별 수치 3. 기타 지하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 협조사항 	<p>법령 개정에 따라 구분 간</p> <p>개정된 영 제20 / 제6항5호 표시도면 규격 명시</p> <p>규칙의 변경에 따라 명칭</p>

현행	개정(안)	시유
<p>(2) 시장은 지하수개발·이용자, 기타 이해관계자가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성실하게 검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수용이 곤란하거나 불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견을 제시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3)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람하도록하고 공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적을 고시하고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에 등재하여야 한다.</p> <p>제5조[보전구역내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1) 법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하수개발·이용 행위의 범위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서 양수능력 1일 30분이상으로 개발·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p>	<p>(2) 시장은 지하수개발·이용자, 기타 이해관계자가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성실하게 검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수용이 곤란하거나 불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견을 제시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식 제</p> <p>식 제</p>	<p>영 제20조제7항에 의거 규 제13.7에 대한 개정내용 명</p> <p>보전구역내 개발·이용 등의 대상 및 신청자 개수 법 제13.5, 영 제21조에 명</p>

현 행	개 심(안)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안에 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사완료후 7 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준공 신고서를 제출하 여 한다.</p> <p>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 준공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조사하고 적합한 시설로 인정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필증용 교부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은 관련법규에 위반하거나 부정할 수단 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 는 개수·이전·폐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 다.</p>	

현행	개칭(안)	시유
<p>제6조[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1조제3호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 설치지역의 지하수 수질, 수위 및 대수층 등을 사전에 조사분석하여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이 수립된 지하수조사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지하수업무 주관부서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내역서를 검토하게 하여 당해 시설물 설치의 허가 및 신고시에 필요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1조제3호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p>	<p>식 제</p>	<p>법 제13조 및 영 제21조 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 허가 및 기준 명칭</p>

현행	개칭(안)	사유
<p>제7조[오염방지조치 등] 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이용 개시전에 주변환경이 훼손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배수시설, 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관리 하여야 하며, 지하수 사용으로 인해 유발되는 공공하수도의 추가증설, 개량공사 및 하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목적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공사에 따른 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대상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자는 총리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및 주변환경보호에 적합하도록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에 매설되는 시설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이물 이음 증명할 수 있는 설계도면, 시공과정의 사진 등 관계서류 및 자료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p>	<p>식 제</p>	<p>오염방지조치기준 적용의 이유 및 배수시설 설치의 수준보강을 통한 환경 보전</p> <p>영 제1항의 개정안에 식 사 원안을 검토하여 관계 공무원의 신청하 도록 명석</p>

현행	개정(안)	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제8조[수질검사기관] ①시장은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기관이 서울지역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할 때에는 그 결과를 매년말까지 시장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다.</p> <p>② 수질검사기관은 검사기록부를 비치하고 수질변동실태를 관측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수질악화시 그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p>	<p>제7조[지하수관측정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장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하수관측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자치구청장에게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관측정의 운영관리권 위임할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관측정을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제8조[수질검사기관] ① 시제</p> <p>① 수질검사기관은 검사기록부를 비치하고 수질변동실태를 관측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수질악화시 그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p>	<p>지하수 관측정의 설치 운영관리 및 관측정 신설</p> <p>영 제30조에 수질검사 결과 통보 의무화 명시</p>

현행	개정(안)	시유
<p>제9조[수질검사 수수료 등] 총리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수질검사를 하는데 따르는 검사수수료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를 준용한다.</p>	<p>제9조[수질검사 수수료 등] 환경부령 제0조제0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수질검사를 하는데 따르는 검사수수료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를 준용한다.</p>	<p>규정의 변경에 따라 변경</p>
<p>제10조[지하수관리위원회] 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들을 검토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소속하에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의 조사 및 장기 활용계획 2.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변경·해제 및 주요 행위허가 사항 3. 지하수 개발이용 분쟁 4. 서울특별시조례 개정안 5. 기타 지하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p>제10조[지하수관리자분위원회]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들을 검토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제107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소속하에 지하수관리자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의 조사 및 장기 활용계획 2.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변경·해제 및 주요 행위허가 사항 3. 지하수 개발이용 분쟁 4. 서울특별시조례 개정안 5. 자치구청장이 요청하는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협의 6. 기타 지하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p>법 개정에 따라 조분정리</p> <p>영 제40조에 일원화 된 조기가 신설됨에 따라 관공항 신설 및 명칭 변경</p> <p>지하수개발·이용허가와 관련된 자치구청장의 요청에 한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규정 신설</p>

현행	개정(안)	시
<p>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하수국장이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의 2·3급 공무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p>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권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p> <p>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한다.</p>	<p>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하수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하수국장이 기명 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의회 순자원관리위원회 위원 2. 서울특별시의 2·3급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p>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권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p> <p>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한다.</p>	<p>위원회의 구성에 하여 위원장을 시의원 임수근</p>

현 행	개 정(인)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4조 【감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감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p>	<p>제14조 【감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감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p>
<p>② 감사는 치수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계장이 된다.</p>	<p>(2) 감사는 치수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계장이 된다.</p>
<p>③ 감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감사관을 보조한다.</p>	<p>(3) 감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감사관을 보조한다.</p>
<p>제15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 또는 자료나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15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 또는 자료나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16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16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17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p>	<p>제17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p>
<p>제18조 【권한의 위임】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p>	<p>제18조 【권한의 위임】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p>

현행	개정(안)	시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의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2. 법 제8조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정명령 등 3. 법 제9조의 원상복구 명령 4. 법 제11조의 지하수 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5. 법 제12조제2항의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6. 법 제15조제2항의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7. 법 제16조의 수질검사 등 8. 법 제17조의 출입검사 등 9. 법 제18조의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10. 법 제24조의 과태료 부과정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의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2. 법 제8조의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3. 법 제9조의 착공신고 등 4. 법 제10조의 허가의 취소 등 5. 법 제11조의 지정명령 등 6. 법 제13조의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7. 법 제14조의 이행보증금의 예치 8. 법 제15조의 원상복구 등 9. 법 제16조제2항의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10. 법 제17조제2항의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11. 법 제20조의 수질검사 등 12. 법 제21조의 출입검사 등 13. 법 제22조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등 록 등 14. 법 제27조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지정 15. 법 제31조의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16. 법 제35조의 청문 17. 법 제41조의 과태료 부과정수 	<p>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 신규 법령입부 조문 권한 입입</p>

현행	개정(안)	시유
<p>제19조 【과태료의 부과】 시장은 법 제24조에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p>	<p>제19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1.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의 같다.</p> <p>2. 영 제4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제임징수관직무지리규칙 또는 자치군의 직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p>	<p>과태료의 부과요령 및 39조 및 제40조에 명시되어 있는 종전의 규정을 삭제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부과 순서를 정함</p> <p>징수절차는 대부분에서 종전 과태료부과절차와 관련하여 표준안으로 정함</p>
<p>제20조 【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장이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유량계의 경우 이 조례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고장 또는 불량으로 교체위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고 그외의 유량계에 대해서는 검정유효기간까지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p>	<p>제20조 【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